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합관리 대상 업종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어, 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적용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통합허가 적용 시기 규정(시행령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새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부칙 제13603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존사업자로 보며,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일을 새로 통합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적용시기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6717